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11
----------	-----

발의연월일 : 2015년 9월 9일

발 의 자 : 이진삼 의원

찬 성 자 : 이경선, 박상홍, 김혜미  
황춘하, 박경희, 장숙이  
서호성, 윤선경, 이기수  
김순길, 김호진, 황춘하  
의원 (12인)

## 1. 개정이유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는 32개 종목 327개 동호회가 운영될 정도로 생활체육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의 명칭과 조항 등에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나. 체육활동, 체육진흥 등의 용어를 생활체육활동, 생활체육진흥 등으로 수정하여 규정함.(안 제1조, 안 제3조)

다.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조항을 삭제(안 제3조 제2항 제5호)

라.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수정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제7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정책기획담당관 및 문화체육과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 (2015. 9. 16. ~ 9. 2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체육활동”을 “생활체육활동”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체육진흥”을 “생활체육진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체육종목”을 “생활체육종목”으로 하고, 제1호에서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민 생활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육성이 필요한 생활체육종목·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4.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5. 삭제
7. 생활체육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서대문구 <u>체육진흥</u>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u>체육활동</u>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육성 및 경비의 지원)</p> <p>① 구청장은 <u>체육진흥</u>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종목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 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u>체육종목</u> 육성 및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민 <u>체육생활화</u>운동 전개</li> <li>2. 육성이 필요한 <u>체육종목</u> 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li> <li>3. <u>체육행사</u>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li> <li>4. <u>체육단체</u>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li> <li>5.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li> <li>6. 생략</li> <li>7. <u>생활체육협의회</u>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li> </ol>	<p>서울특별시 서대문구 <u>생활체육진흥</u>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u>생활체육활동</u>-----</p> <p>제3조(육성 및 경비의 지원)</p> <p>① 구청장은 <u>생활체육진흥</u>을 위하여 -----</p> <p>-----</p> <p>-----.</p> <p>② 제1항의 <u>생활체육종목</u> 육성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민 <u>생활체육생활화</u> 운동 전개</li> <li>2. ----- <u>생활체육종목</u> -----</li> <li>3. <u>생활체육행사</u>의 -----</li> <li>4. <u>생활체육단체</u> 및 -----</li> <li>5. &lt;삭제&gt;</li> <li>6. 생략</li> <li>7. <u>생활체육회</u> 사업 -----</li> </ol>

## 관계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5.29. 법률 제12690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